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조합원 취소분)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 분양문의 1533-206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11.(월)	2026.05.21.(목)	2026.05.22.(금)	2026.05.26.(화)	2026.06.01.(월)	2026.06.06.(토)~ 2026.06.07.(일)	2026.06.12.(금)~ 2026.06.14.(일)

1

공동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iksaprugio.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점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점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점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점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점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거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 / 1,2순위)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1.(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21.(목)	2026.05.22.(금)	2026.05.26.(화)	2026.06.01.(월)	2026.06.06.(토)~ 2026.06.07.(일)	2026.06.12.(금)~ 2026.06.14.(일)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주택전시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주택전시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에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01.)**로 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주택과 - **19216호(2026.05.08.)**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석사동 1126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6층 4개동 총 458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23세대**
[특별공급 11세대(기관추천 2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신혼부부 5세대, 생애최초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계		
2026000098	01	074.9682	74	74.9682	27.6654	102.6336	45.8836	148.5172	43.4201	6	-	-	1	-	1	5	2
	02	084.8777A	84A	84.8777	31.2416	116.1193	51.9487	168.0680	49.1595	16	2	2	4	2	10	6	-
	03	084.3593B	84B	84.3593	31.7243	116.0836	51.6314	167.7150	48.8593	1	-	-	-	-	-	1	-
합 계										23	2	2	5	2	11	12	2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면적 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대지지분의 증감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계약면적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하는 경우에도 정산금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74	84A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1
	장애인(경기도)	-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1	1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	1	1
생애최초 특별공급		-	2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4	5
합 계		1	10	1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세 대 수	동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충분양가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10%	10%	10%	10%	10%	10%	
74	6	101동(4), 102동(4)	2층	2	235,212,091	415,787,909	651,000,000	2,550,000	30,0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227,850,000
		102동(2), 103동(4)	10층, 13층	2	242,799,577	429,200,423	672,000,000	3,600,000	30,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35,200,000
		102동(2)	19층	1	246,773,975	436,226,025	683,000,000	4,150,000	30,0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68,300,000	239,050,000
		104동(2)	25층	1	254,361,462	449,638,538	704,000,000	5,200,000	30,0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46,400,000
84A	16	103동(1)	4층	1	263,394,184	465,605,816	729,000,000	6,450,000	30,0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101동(3), 102동(1)	5층, 9층	2	267,729,891	473,270,109	741,000,000	7,050,000	30,0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101동(2,3), 103동(1)	10층, 12층	3	272,065,598	480,934,402	753,000,000	7,650,000	30,0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63,550,000
		101동(1)	15층	1	276,401,305	488,598,695	765,000,000	8,250,000	30,0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67,750,000
		101동(1), 102동(1) 103동(1,3)	21층, 23층, 24층	4	280,737,011	496,262,989	777,000,000	8,850,000	30,0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71,950,000
		101동(2), 102동(1)	28층	2	285,072,718	503,927,282	789,000,000	9,450,000	30,0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276,150,000
		102동(1,3)	32층 ~ 34층	3	289,047,116	510,952,884	800,000,000	10,000,000	3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80,000,000
84B	1	103동(2)	34층	1	289,047,116	510,952,884	800,000,000	10,000,000	3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80,0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5.9.26.이었으며, 조합취소분 발생으로 추가 공급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원활한 입주예정일(2028년 6월)을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자에게 꼭 필요한 항목인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필수 계약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계약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74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84A,84B 타입)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입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점자(동일 주택형의 한함)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의 주택형별 낙점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경기북부 보호지청 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고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고양시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 50%(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하며 공급 신청자의 연령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한부모 가족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10년 이상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름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5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3단계	우선공급 (25%)
	4단계	일반공급 (10%)
	5단계	추첨공급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양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 기준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5.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청약당첨자가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고양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이하</td><td rowspan="2">40%</td><td rowspan="2">60%</td></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r></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3">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td><td rowspan="3">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최대)	본인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 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01.(월) ~ 2026.06.10.(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01.(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문의전화
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2026.06.06.(토)~2026.06.07.(일) 10:00~16:00까지	1533-2060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신청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및 제54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주택전시관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혼인 여부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주택전시관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주택전시관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최초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세대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사진)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세대원		• 주택전시관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결과 사진)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본인 및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④ 연금산정용가입확인서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④ 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미신고자)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홈택스) ④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홈택스) ②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홈택스)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전시관 ② 세무서/(홈택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아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주민센터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 아래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홈택스)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11.)**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중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연속적인 납부 실적이 아닌,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함.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6.12.(금)~2026.06.14.(일) 10:00 ~ 16:00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주택전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4-2)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에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 안내 예정임.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상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전시관 비치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O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차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O		위임장	계약자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O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O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농협은행	355-0092-7564-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계좌(농협은행355-0092-7564-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입금됩니다.
- ※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점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공급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점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점자 포함) 당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점자로 전산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점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점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점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점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 공급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단, 부적격당점자로 판정된 자는 향후 무순위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신,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 계약서를 준용함.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함.
- 본 공급계약(아파트 분양계약서 / 발코니 확장계약서 등)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권리의무승계(전매) 등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등(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별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용함.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됨.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됨.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 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일정 등 세부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이자후불제 조건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 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 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는 대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합니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합니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일 경우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합니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이하일 경우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
--	--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필수 선택 항목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체결시	입주 시
74	27,500,000	2,750,000	24,750,000
84A	30,800,000	3,080,000	27,720,000
84B	30,800,000	3,080,000	27,720,000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농협은행	355-0092-7558-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 수납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0501호 : ‘10105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공급 세대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며, 모계좌(농협은행 355-0092-7558-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잔금 선납 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됨.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다른 공간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상가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자재조달 및 세대공사 등 공사여건 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과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인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고 드레인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으로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입주 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을 개별로 시공한 입주자는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고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기본형(무상)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연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감지기, 스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저층부 석재 적용 구간 및 시공 상세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가구, 주방가구 등) 배면, 벽, 바닥, 천장에는 시공 선풍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장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샤시 대신 분합문이 설치되고, 발코니 외부창이 설치가 되지 않으며, 외부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유상)
1) 현관중문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현관 중문	전타입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 중문+시트판넬	74	1,740,000	-
				84A	1,900,000	-
				84B	1,900,000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색상, 프레임, 하드웨어 사양, 스위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가구 마감판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타입	1. 전 실 강마루(섬유판) 2. 실크벽지	1.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2. 흡착벽지 3. 복도, 소파뒷벽 시트판넬 4. 복도 간접조명	74	3,780,000	-
				84A	4,020,000	-
				84B	4,090,000	-

- 벽 마감재 옵션 중 흡착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자재와 동등이상으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복도 시트판넬 구간에 면한 목창호 문선 및 상부 램마의 형태 및 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명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조명 특화	전타입	거실, 침실 기본 조명+스마트스위치 일반형	거실라인 간접등+침실 엣지 간접등+스마트스위치 고급형(디밍/색온도 조정 가능)	74	1,730,000	-
				84A	1,710,000	-
				84B	1,710,000	-

- 조명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동등이상으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실 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설치 되어 있는 스마트스위치는 참고용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유상)

1) 현관/복도 수납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현관/복도 수납특화	전타입	1. 기본 신발장 2. 현관창고: 가구도어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3. 복도 팬트리: 가구도어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1. 신발장 특화: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2. 현관창고 특화: 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3. 복도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특화	74	3,200,000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2,550,000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84A	3,400,000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2,800,000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84B	3,400,000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 시
					2,800,000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 현관/복도 수납특화 기본형(1안)의 현관창고 및 복도 팬트리 내 설치되는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시에만 제공됩니다.
- 현관/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될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신발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 설치에 따라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신발 살균기 및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복도 수납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가구 판넬이 연장되어 시공되며 현관중문/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 여부 및 타입에 따라 가구판넬 시공 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합니다.

2)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드레스룸 특화	전타입	1. 파우더장 2. 드레스룸 (가구도어+폴대형 시스템선반)	통합형 드레스룸: 포켓도어+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천정형 제습기	74	3,630,000	-
				84A	4,670,000	-
				84B	3,040,000	-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의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가구도어+폴대형시스템선반)은 확장 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의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의 디자인 시스템선반 구성품 중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미선택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 및 천장형 제습기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드레스룸 제습기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드레스룸 제습기	전타입	미설치	천정형 제습기(가야/KY-1005P)	830,000	-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함께 설치되는 품목으로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 미선택 시에는 제습기용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4) 침실1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침실1 드레스룸 특화	74, 84B	미설치	포켓슬라이딩도어+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74	4,110,000	-
				84B	5,310,000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4,690,000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의 디자인 시스템선반 구성품 중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미선택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74, 84B(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는 포켓슬라이딩도어 양측면(전면)이 시트판넬로 마감되며, 84B(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는 가구판넬로 마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침실2,3 불박이장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침실2,3 불박이장	전타입	미설치	침실3 불박이장(폴딩도어) 1개소	74	1,520,000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폴딩도어) 2개소	84A	3,800,000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폴딩도어) 2개소	84B	3,800,000	-

- 침실2,3 불박이장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됩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에 공통 적용되며, 개별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3의 문, 스위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라이프업 키친 옵션(유상)

1)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선택형(유상옵션) - 3안	금액		비고
주방 스타일링 특화	전타입	1.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2. 수전: 국산	1.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 수전: 외산 3. 상부장 하부조명	1. 벽/상판: 세라믹 타일 2. 수전: 외산 3. 상부장 하부조명	74	2,420,000	유상옵션 2안
						3,200,000	유상옵션 3안
					84A	2,600,000	유상옵션 2안
						3,300,000	유상옵션 3안
					84B	2,550,000	유상옵션 2안
						3,200,000	유상옵션 3안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과 주방 특화 옵션은 동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상부장 하부조명의 규격 및 스위치 개수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진명홀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선택형(2안,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2) 주방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주방특화	전타입	1. 주방+주방 팬트리 2.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3. 수전: 국산	1. 평면특화: 장식장 + 주방 팬트리특화 2. 벽/상판: 세라믹 타일 3. 수전: 외산 4. 상부장 하부조명	74	8,450,000	-
						-
						-
		1. 주방 2. 벽 : 타일(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MMA) 3. 수전: 국산	1. 평면특화: 아일랜드 + 장식장 2. 벽/상판: 세라믹 타일 3. 수전: 외산 4. 상부장 하부조명	84A	8,400,000	-
				84B	8,330,000	-

- 주방 특화는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의 선택에 따라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재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상부장 하부조명의 규격 및 스위치 개수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 일체형 싱크수전 (진명홀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됩니다.

3) 주방 냉장고장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주방 냉장고장	전타입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3컬럼패키지 냉장고 + 키큰장	74	5,320,000	-
				84A	5,230,000	-
				84B	5,230,000	-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RZ34C7865AP), 냉장고(RR40C7995AP), 김치냉장고(RQ34C79(8)45AP)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 마감재는 새틴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4) 주방가전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선택형(유상옵션) - 3안	금액		비고
쿡탑	전타입	미설치	쿠첸 / CEN-IF3A0NBA	디트리쉬 / DPI-4320B	일반	650,000	-
					고급	1,980,000	
전기오븐	전타입	미설치	엘지전자 / MZ385EBT1	엘지전자 / MZ941CLCAT	일반	450,000	-
					고급	850,000	
식기 세척기	전타입	미설치	엘지전자 / DUE5NSE	엘지전자 / DIE6PT	일반	1,100,000	-
					고급	1,400,000	

- 쿡탑 선택형(2안, 3안) 선택 시, 주방 가스배관은 차단밸브까지 설치되며, 주방상판 타공은 되지 않습니다.
- 쿡탑 기본형(1안) 선택 시,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하츠, SSGC-3605SABH)
- 타입별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은 일반형 : 샤이니퓨어, 고급형 : 가구마감 으로 설치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기본형(1안) 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 옵션 (유상)

1) 욕실 특화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욕실 특화	전타입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해당 욕실) 5. 전자비데 (욕실2)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국산 수전 색상특화 3. 외산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해당 욕실) 5. 악세사리류 및 샤워부스 색상특화	74	5,200,000	-
				84A	5,200,000	-
				84B	5,200,000	-

- 욕실 특화의 유상옵션은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배수구의 위치, 규격,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의 위치,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욕실 복합환풍기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욕실 복합환풍기	전타입	미설치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공용, 부부욕실), 힘펠 / FHD3-C150P MT	74	1,300,000	-
			욕실 복합 환풍기 1개소 (부부욕실), 힘펠 / FHD3-C150P MT	84A	650,000	-
				84B	650,000	-

- 욕실복합환풍기 기본형(1안) 선택 시 기본으로 일반 욕실배기팬이 각 욕실에 설치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74타입은 2개소, 84A/B타입은 1개소 설치됩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선택형(유상옵션) 3안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시스템 에어컨	전타입	미설치 (매립 냉매배관 2개소)	엘지전자 2대 (거실+침실1)	74	3,000,000	-
				84A	3,200,000	-
				84B	3,200,000	-
			선택형(유상옵션) - 3안	금액		비고
			엘지전자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4	5,600,000	-
				84A	5,800,000	-
				84B	5,800,000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시스템 청정환기 ※기본형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옵션) - 2안	금액		비고
시스템 청정환기	전타입	미설치	삼성전자 2대 (거실+침실1)	전타입	1,980,000	-
			선택형(유상옵션) - 3안	금액		비고
			삼성전자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전타입	3,940,000	-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형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납부금액	납부시기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시	농협은행	355-0092-7558-13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시(입주지정기간내)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사업시행자 식사동지역주택조합과 수분양자 간 직접계약이며, **아파트 계약시 함께 계약 체결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변경, 해약이 불가하며, 일정시점 이전 해약 시에는 위약금(총대금의 10%)이 발생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안내문 형태로 고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모델, 상품구성 및 디자인(색상포함), 설치위치,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를 위한 배관공사 등 개별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 설치 및 시공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욕실 배기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정해집니다.
- 불박이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 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청산하였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주방 상판, 주방벽의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분절 시공될 수 있으며,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디자인패널 및 복도 패널 마감의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도어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해당부위는 서랍장으로 마감됩니다.
-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상기 공고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수납가구와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결합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공고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의 도어 패널 재질, 색상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전시관 건립세대에 전시된 범위 내에서만 선택가능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 가구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디자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기본제공 가구마감변경, 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등)
- 각 주택형별 침실1 및 드레스룸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복도수납특화 옵션 판매가격에는 신발장 디자인 변경 금액과 상부 LED 조명, 신발살균기 전원공급 관련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현관/복도수납특화 옵션 선택시 신발장 내에는 신발 살균기(유상제공)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 상 중문을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 (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폭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트 판넬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으며(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특화 조명 선택 시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특화 조명 선택 시 기본형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다운라이트 조명 특성상 하부에서 직접 광원을 바라볼 경우 눈부심이 있습니다.
- 특화 조명 선택 시 거실 스위치가 터치 스위치로 변경되며 조명 제어 장치 설치를 위한 점검구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주택전시관 건립세대에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1개소), 시니어클럽-경로당(1개소), 주민공동시설(지하1층:피트니스1개소, 골프클럽-실내골프연습장1개소, 스크린골프1개소, / 지하2층: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1개소, 그리너리스튜디오-독서실1개소),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1개소), 어린이집(1개소)

※ 부대 및 복리시설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보수절차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주택건설감리	건축구조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경동엔지니어링	(주)이오스	(주)력기기술단	(주)한국코아엔지니어링	(주)하림기술단
감리금액	2,047,741,300	77,000,000	558,493,410	104,810,600	196,9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내진등급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등급	VII - 0.204g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 7M	지하 1층 : 2.7M 지하 2층 : 2.3M	지하 1층 : 2.8M 지하 2층 : 2.5M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없음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 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illegible]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 호	식사동지역주택조합	(주)대우건설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종1길 16, 7층 701호(식사동,예일엠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45-20-02140	110111-2137895 (104-81-58180)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6-101-0002300 호	₩ 11,150,1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입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2

유의사항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계원현루, 쓰레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도로와 인접한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은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내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 내부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 정압기 설치 장소, 면적 등은 가스공사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개발(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옥외 실외기, 계원 현루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로당(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람(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으나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정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중앙광장, 필로티,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펌프실, 영구저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단지 배치상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옥외 실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매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고,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대지경계에 접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발생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계획 상 벽체 및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별도 산정되어 있고,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보관소는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102동에 인접해 있으며, 101동, 102동에 인접한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저층부에는 시니어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입주하는 상가 종류에 따라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레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및 후면부 좌우, 각 호실별 위치에 따라 경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실외기 배치는 근린생활 시설용은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는 주민공동시설은 101동 주변, 관리사무소,어린이집은 102~103동 사이, 경로당, 경비실은 내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실외기에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비산 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실외기 중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일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사생활침해, 냄새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에 돌출되는 DA의 위치 및 크기, 그릴창의 크기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적용디자인은 현장여건과 디자인 변경으로 인해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른 단지 내 문주 설치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101동, 102동, 저층세대는 조망, 빗공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1층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택배차 진입층인 지하1층 주차통로의 높이는 2.7m 로 계획되고, 택배차 진입구간 외에는 2.3m 로 계획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은 103동 1층에 경로당(시니어클럽), 102동, 103동 사이 지상1층과 지상2층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101동 지하1,2층에 주민공동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며, 102동, 103동 사이 선근에 방재실, 103동 지상1층에 MDF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레벨은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E/V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등은 동별·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창호이며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호는 개폐가 불가능합니다.
-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용 조명,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중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진동, 소음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불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전기실 DA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603대(공동주택(지하) : 601대, 근린생활시설(지상) : 2대)로,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및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석재, 도장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면적 및 자재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색채, 출눈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허가 조건
-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거용 총32대 (급속 9대, 완속 23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지하1,2층은 아파트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https://siksaprugio.com>)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미분양 세대는 사용승인 이후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유동화, 임대, 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된 편의시설 및 조경을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임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번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승인된 건축허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세대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폭염 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지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으로 인해 홈네트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관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그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시공자는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공용부 중 일부 공간을 현장AS센터(가칭) 및 다목적창고(하자보수/유지관리용 자재 등)로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CS기간이 완료되면 다목적 창고는 관리사무소로 인계하여 활용방식 등은 관리사무소가 추후 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상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세대, 보행로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74 타입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품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무상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건본세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도서(단위세대 전등, 전열 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주택전시관에 따르며, 본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별 용도 및 면적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형태나 주동 입면의 패턴, 색채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내에는(최하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 하향식 피난구 및 사다리개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인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건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건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한 가구 또는 평면 변경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 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입구 디자인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마감 코킹(실리콘)은, 본공사시 품질확보를 위해 추가 및 색상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등의 완공 예정년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 대지경계선 외의 구간은 대지경계선 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 미포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면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선행세대(선행하여 시공,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Mock up세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감재의 훼손에 대해서는 입주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인허가 진행 시 인허가청 협의사항 및 인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 설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중 주동 입면 색채 및 부대시설 디자인 변경 관련 설계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며, 변경 후 이미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이 불가한 경우 분양안으로 최종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관련 유의사항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은 당 사업과 무관하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유의사항

-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옥외송수구함, 쉼, DA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지 지상 차로는 비상차로로 소방차, 구급차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보관소, 엘리베이터(주동),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실내골프연습장),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태양광패널, 옥상 배기구, 보안등 및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최종 사업승인 변경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익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는 설치 위치 및 개소, 크기와 형태, 내부 설치 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펌프,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 · 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 · 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관련 설비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1층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조경수목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저층부 석재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1층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와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저수조, 배수조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건축허가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문주에 위치 합니다.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첨 후 반드시 주택전시관 모형도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층 및 지하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지상부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 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전 동 주동 지붕에 설치되며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1층 각동 출입부에 설치됩니다. 주차장 주출입부 여건에 따라 특정 호수에 편향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급배기용 환과 주차면이 간섭되어 바람에 의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은 지하1~지하2층까지 2개층으로 구성되어있고, 지하1층에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 합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천정공간 내부가 인접실을 위한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급수, 급탕, 전력 등의 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저층부는 석재, 그 외는 구간은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되며, 향후 석재 종류, 줄눈, 색채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사, 비상차량 및 보행자 전용 출입구이며 ,주차장 출입구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 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계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을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층 주변에는 영구저류조, 102동 지하층 주변에 펌프실/저수조, 103동 지하층 주변에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는 102동 부근 3개소, 104동 부근에 1개소가 설치되며 입주민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요성금속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의 바닥 레벨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레벨, 조경 및 토목 계획(식재, 보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합니다.
- 「주택법 시행 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일산은행초등학교에, 중학생은 풍동중학군(풍동중, 풍산중)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기존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단, 고양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계획이 변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 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 예정 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등은 향후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 배치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 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배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공사 중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변경 승인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규모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동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안내시설물, 조정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전동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2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지하1층 PIT, 팬룸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엘리베이터 승강로 이동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조정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조건이행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계획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형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각 동 부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와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식재 수종,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과 식재는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유의사항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 계획과 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음식을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지하편스토랑,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2동과 103동 사이에는 지하1층 주차장과 방재실로 들어가는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 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지하주차장과 그리너리라운지(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로 들어가는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소음, 진동, 세대 빛공해(눈부심)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 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업종이나 실외기로 인하여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그리너리라운지(피트니스, 골프클럽,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등),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및 비상차량(이삿짐, 소방차량 등)의 출입에 의하여 소음, 진동, 불빛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무인택배보관함은 보행동선,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과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3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관련 외부마감법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계승기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과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디퓨저, 바닥배수구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공사에 따른 줄눈나누기, 마감 및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난방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지상1층 로비(또는 엘리베이터 홀)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동의 홀 내부의 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변경 시 면적 변경이 발생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관련 유의사항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층고는 2,850mm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내부 구조(경량벽 포함)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견본세대 CG는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전평형 발코니 확장형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적용되어 표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옵션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는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등 각종 설비배관이 노출(천장,벽)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수량, 타입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장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용이 설치되며 주택전시관 디자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릴창 근처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타입 선택 시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 장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및 복도 패널 마감의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판넬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등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타일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물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공사여건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장,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는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됩니다.
- 주방TV와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임의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료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일부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인·허가 과정,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장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세탁실에는 세탁기, 손빨래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 별로 필로티의 위치가 다르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배치되는 세대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이 점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4타입의 발코니2(보조주방) 창호 사이즈는 다른 평형과 상이하게 계획되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악세서리 등의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 또는 가구장의 공간이 기계/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수정될 수 있으며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현관팬트리, 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직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 및 배관은 상부세대용으로, 상부세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 천장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바닥배수구는 동절기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전기쿠팡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쿠팡이 설치될 경우 주방 상판은 타공되지 않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쿠팡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태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엘지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건축허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등 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볼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웬스, 각종 게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획 및 대수 산정은 법규 및 각종 심의에 의해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리너리라운지(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지하1,2층 출입구는 101동 지하1,2층 동출입구와 복도를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합니다.
 - 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분양자”,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 푸르지오 파크센트 [홈페이지 : <https://siksaprugio.com>]
- 주택전시관 :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634-2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https://siksaprugio.com>

사업주체 : 식산동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주) 대우 건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대표번호
1533-2060